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의 면제 범위 구체화〉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58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6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26.
3. 회부연월일 : 2025.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상 시험 면제 범위를 제1차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증 교부 등) ① · ② (생략)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증 교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 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제1차 <u>시험을</u> 면제할 수 있 다.	③ ----- ----- ----- ----- ----- ----- ----- ----- <u>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u> <u>를</u> -----.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기획 및 재난상황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해당 자격을 통해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전문자격임.

2024년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¹⁾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 3월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202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27년까지 시험 실시를 위탁 수행할 기관의 선정,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등 자격시험 제반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 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련을 통해 2028년부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2025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자격제도 정착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함.

[2025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관련 주요 업무추진 현황]

구 분	기 간	주요 내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5. 1~3월	■ 시험과목 및 방법 규정 ■ 합격자 결정 방식 규정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정착방안 연구용역	2025. 4~11월	■ 재난관리 분야 NCS 개발방안 마련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 공인재난관리 자격증 활성화 방안 마련

(자료 : 행정안전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은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자격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개 과목(①재난관리총론, ②재난위험평가, ③재난예방·대비, ④재난대응·복구), 제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 2개 과목(①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분석, ②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으로 실시될 예정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시험횟수	매년 1회
시험과목	(1차시험) 객관식 4과목 / (2차시험) 주관식(논술형) 2과목
합격결정	(1차시험·2차시험)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 중 총점이 높은 사람
자격발급	2차시험 합격 후 연수과정 수료 시 자격증 발급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포함 9~13인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현행법은 「국가기술훈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 4개 과목을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을 전부 면제하는 것은 자격 미보유 응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1차 시험의 면제 범위에 ‘과목의 일부’를 추가하여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 시험의 사례를 참조할 때,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에 상응하는 관련 자격의 객관식 필기 시험 과목의 종류가 자격별로 차이가 있어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제1차 시험(객관식 필기시험) 과목]

구 분	시험 과목
공인재난관리사	①재난관리총론, ②재난위험평가, ③재난예방·대비, ④재난대응·복구
기업재난관리사 (실무 분야)	①재해경감활동 정책 수립, ②업무영향분석·위험평가, ③사업연속성 전략 개발, ④재해경감활동 절차, ⑤모니터링 및 평가
방재기사	①재난관리, ②방재시설, ③재해분석, ④재해대책, ⑤방재사업
방재전문인력	①재난관리이론 및 사업 시행, ②재해예방 계획수립

(자료 : 행정안전부)

2) 현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실효성과 응시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이 해당 자격을 통해 검정 받은 과목과 동일·유사한 시험과목만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제도(안)]

구 분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예방·대비	재난대응·복구
재난관리학과 등에서 필수 교과목 모두 이수한 자	면제	면제		
방재기사 취득한 자	면제	면제		
기업재난관리사 취득한 자	면제	면제		
방재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	면제	면제		
제1차 시험합격자 ※ 차회 제1차 시험 한정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자료 : 행정안전부)

문 의 처

02)6788-5349